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1호)

심 사 보 고 서

1998. 12. 24.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12. 9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1998. 12. 1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1998. 12. 21 상임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과권자, 청문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용어의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부과권자를 군수로 함.(안 제2조 내지 제10조)
○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용어를 의견진술로 정비 (안 제3조)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함에있어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부과권자"를 "군수"로 "청문"을 "의견진술"등으로 용어를 일부 정비 및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과태료는 어떤 유형에 대하여 부과하며, 부과액은 얼마인지
- 답 : 공중시설물 이용 및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 판매행위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액은 현재까지는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8. 12.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